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1월 10일

○ 회부일자 : 2011년 1월 1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서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등 가입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동기 및 필요성

- ㅇ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07.12.14.)에 따라 종전에 교육감이 수행 하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 관련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로 변경되어, 지역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평생 교육진흥사업 추진 등 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사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ㅇ 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와 전국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조례 미제정 자치단체(2) : 충북, 전북
- ㅇ 다만,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제285회 정례회 제5차 행정 소방위원회('09.12.16.)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보류되어 제8대 의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된 것으로서, 당시 심사보류 사유였던 예산 확보 문제와 도 교육청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

- ㅇ 조례안의 주요 내용
 -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 운영방식 등을 규정
 - 동법 제20조에 의거 도지사가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하거나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 교육 정책개발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계좌제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정하였으며,

-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본 조례안의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 사무 추진을 위해 지역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현재 도내에 운영중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각종 연계사업의 경비 지원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 2011. 1. 18 현재>

시・도	인원	조 직	시·도 평생 진흥원 지정	조례제정 여 부
서울시	32	1국 3담당관 7팀(학교지원 3팀 18명, 평생교육 3팀 11명, 교육협력 1팀 3명)	미 정	09. 3. 18
부산시	14	교육협력관 3팀 (교육지원 7, 인재양성 4, 평생교육 3)	출연기관 위탁예정	09. 2. 4
대구시	13	교육학술팀 2담당 (교육학술 6, 교육지원 7)	소속기관 위탁예정	09. 5. 11
인천시	19	1담당관 3팀 (교육지원 9, 대학지원 4, 평생교육 6)	미정	09. 10. 12
광주시	15	1과 2팀(인재육성 5, 교육협력 10)	소속기관 위탁예정	10. 10. 1
대전시	9	1담당관 2팀(교육협력 6, 평생교육 3)	설립 진행 중	08. 12. 26
울산시	10	1담당관 2팀(교육협력 6, 평생교육 4)	RHRD센터 위탁예정	09. 10. 16
경 기	49	1국 3과 9팀(교육정책 21, 교육협력 9, 평생교육 18)	미정	09. 10. 5
강 원	5	교육협력팀 5명	소속기관 위탁예정	09. 9. 25
충 남	9	1담당관 2팀(교육협력 6, 평생교육 3)	미 정	08. 10. 30
충 북	5	교육지원 5명	미 정	제정 예정
전 북	14	1과 3팀 (인재양성 6, 학력지원 4, 학교급식 4)	소속기관 위탁예정	제정 예정
전 남	5	교육지원 5명	미 정	09. 2. 5
경 북	9	1과 2팀(인재육성 5, 학교지원 4)	소속기관 위탁예정	09. 3. 9
경 남	5	교육지원 5명	신하기관 별도 설치	08. 12. 31
제 주	9	1과2팀(인재양성 5, 평생교육 4)	신하기관 별도 설치	09. 3. 18